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471호)

- 2026. 3. 30.
-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12. 박미정 의원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16.
- 다. 상 정 일 자 : 2026. 3. 30.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4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미정 의원)

-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열적 관계를 나타내는 “자매”라는 용어를 성 중립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친선”으로 정비하고,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있어 상위법령에 맞춰 지방의회의 동의 범위 조정을 통해 서초구와의 우호협력 등 다양한 교류사업 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성훈)

1. 개정취지

- 현행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자매결연(姉妹結緣)”의 성차별적 단어의 정비 필요성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범위를 본 개정조례안과 부합시킬 필요성 등에 따라 발의된 안건임.

2. 주요 조례안 검토

- 제명 및 전체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매결연(姉妹結緣)”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매의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직역적 의미와,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의역적 의미를 갖고 있음. 여기서 “자매(姉妹)”는 성별·젠더를 기준으로 특정 집단을 낮춰 보거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1)에서 “친선결연”이라는 성평등적·중립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제명 및 전체 조문에 대한 “자매(姉妹)”를 “친선(親善)”으로 용어 정비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의회 동의)는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체결·취소 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규정을 국내를 제외한 국외 도시로 한정하고, 우호협력을 제외한 자매결연의 체결·취소할 경우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이하 “법”이라 한다)에

1)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한다.

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결 범위인 “국외”로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해 보이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법에 따른 교류·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7조에서 “우호협력”에 대한 의회 동의 규정에 대해서도 삭제·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9조(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는 상호간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교육, 문화예술, 경제, 보건복지, 재난·재해 구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협력하는 활동을 위해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에 일부 조항에 대한 제목 정비 및 전체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을 정비하였음.

4. 종합검토

○ 2026. 1. 1. 기준 서초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계	자매결연	우호협력	MOU	비 고
국내	27	21	-	6	
국외	24	2	9	13	

※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 교섭의 결과로서 당사자 간의 양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둔 문서

○ 현행 조례 제명 및 전체 조문에서 사용하는 “자매(姉妹)”라는 용어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표현하는 “친선(親善)”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성평등적·중립적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은 성차별, 젠더 등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적절해 보이고,

- 의회 동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범위와 부합시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자매결연은 도시 또는 단체 간 행정·문화·경제 등에서 교류·협력을 위해 친선 관계를 맺는 제도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별도의 주체가 아닌 협력과 통합의 관계로 추진되어야 하는 바, 다양한 방식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고,
-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등 사후관리가 미흡해 유명무실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그 밖에 일부 조항에 대한 조 제목 정비 및 전체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을 정비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사 및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사구정리내용 : 없음